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2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30일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Ⅲ. 검토의견

1.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또한 「고용보험법」 [별표 2]를 개정하여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로 하는 등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참조)와 동일하게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u>1년</u> 이상일 것	1. ----- ----- ----- ----- <u>6개월</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표] 현행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표] 개정안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 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참고자료] 현행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 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
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²⁾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함.

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2)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 기간임.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종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제50조제3항 및 제4항).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변경하여 기준기간인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50세 미만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소정급여일수도 확대되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당연 취득하나(「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

9조의2제1항)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보다도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므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때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영업자는 폐업의 시기 역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더욱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자영업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장기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방향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근로자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는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77조의8제1항제1호는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하는 노무제공자 역시 현행 자영업자에 대한 규정과 동일

하게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다른 피보험자 유형과 달리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하고 곧바로 창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임의가입으로 인한 역선택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하여 근로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중이고, 당연가입자인 노무제공자도 자영업자와 동일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적용 중이므로,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확대 필요성은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